

의안번호	2205783
의 퇴 인	강선영의원
회 답 일	2024. 12. 17.
추계번호	24D443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5억 5,600만원, 2030년 178억 6,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60억 3,400만원(연평균 172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련 비용 지원 (안 제12조의2제6항)	16,565	16,880	17,201	17,528	17,860	86,034	17,207

주: 1.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련 비용 지원(안 제12조의2제6항)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80명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봉급을 국가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제6항(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제6항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현재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재직 중인 480명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봉급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약 7,000여개이고 480명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가 이미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업체의 매출액, 근로자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480명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봉급을 행정안전부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행정안전부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재직 중인 480명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봉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직급별 인원과 직급별 1인당 보수와 지원을 50%를 곱하여 산출
 - (인원) 대령급 116명, 중령급 186명, 대위·소령급 178명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퇴역한 군인으로 대령, 중령, 대위·소령 등 세 개의 직급으로 구분
- 2024년 12월 기준 대령급은 116명, 중령급은 186명, 대위·소령급은 178명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인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보수) 대령급 기준으로 2026년 80,310,578원, 2030년 86,590,348원으로 추정
- 2024년 군인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각 계급의 최고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9% 적용

[표 2]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대령	77,343,600	78,813,128	80,310,578	81,836,479	83,391,372	84,975,808	86,590,348
중령	70,964,400	72,312,724	73,686,665	75,086,712	76,513,360	77,967,113	79,448,489
대위·소령	54,691,200	55,730,333	56,789,209	57,868,204	58,967,700	60,088,086	61,229,7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5억 5,600만원, 2030년 178억 6,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60억 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원 (a, 명)	대령	116	116	116	116	116	-
	중령	186	186	186	186	186	-
	대위·소령	178	178	178	178	178	-
1인당 보수 (b, 원)	대령	80,310,578	81,836,479	83,391,372	84,975,808	86,590,348	-
	중령	73,686,665	75,086,712	76,513,360	77,967,113	79,448,489	-
	대위·소령	56,789,209	57,868,204	58,967,700	60,088,086	61,229,760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대령	4,658	4,747	4,837	4,929	5,022	24,193
	중령	6,853	6,983	7,116	7,251	7,389	35,592
	대위·소령	5,054	5,150	5,248	5,348	5,449	26,249
	합계	16,565	16,880	17,201	17,528	17,860	86,0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수를 480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